참여연대 이슈리포트

발행일 2019. 5. 22.

국회개혁이슈리포트②

국회의원 수당의 비밀

독립적인 「국회의원보수산정위원회」 설치해야

목차

목차 **2**

요약 **3**

현황 3

20대 국회의원의 연도별 수당 개인별 합산액 : 보러가기 3

문제점 3

개요 **5**

1. 취지와 목적 5

2. 분석 대상 자료 5

국회의원 수당 지급의 근거 **7**

1.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규칙 7

2.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7

3. 공무원보수규정과의 비교 10

4. 법원, 헌법재판소 보수규정과의 비교 12

국회의원 수당의 문제점 **14**

1. 법 위의 규정, 위임에 위임을 통한 수당 인상 14

2. ‘입법활동 지원’ 명목의 수당 중복 지급 14

3. 특별활동비의 이상한(?) 지급 관행 15

4. 입법활동비와 특별활동비에 대한 근거 없는 비과세 15

결론과 대안 **16**

독립적인 국회의원보수산정위원회 설치 16

부록 **17**

[별첨] 20대 국회의원의 연도별 수당 개인별 합산액 : 보러가기 17

정보공개 청구에 대한 국회 사무처 답변 17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17

요약

- 참여연대는 국회의원 수당의 지급 근거 등과 관련한 문제점을 살펴보고, 개선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이 이슈리포트를 작성함. 이를 위해 국회 사무처에 수당에 대한 근거 규정과 정기적, 공통적으로 지급되는 수당에 대해 정보공개청구를 하였고, 수집된 자료를 분석하였음.

현황

- 국회의원 수당은 「국회의원수당법」에 근거해 지급되어야 함. 그러나 참여연대가 국회 사무처에 정보공개청구해 받은 자료에 따르면, 실제로는 법이 위임한 「국회의원수당규칙」 상 수당 조정이 필요한 경우 '국회의장'이 결정할 수 있다는 제2조(수당의 지급기준 및 조정)를 근거로, 이를 규정에 한번 더 위임해 규정을 개정하는 방식으로 수당 지급액을 정해왔음.
- 국회가 공개한 「국회의원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19년 한 해 동안 국회 직책을 맡지 않는 국회의원 1인에게 공통적,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수당은 매월 최소 11,369,710원+α임. 매년 2차례 지급되는 정근수당과 명절휴가비를 합산하여 2019년 연간 지급 예정인 국회의원의 확인된 수당의 최소 합산액은 아래 [표]와 같음.

[표] 국회의원 전원에게 지급하는 월/연간 지급 수당 최소 합산 추정액(2019년 기준), 단위(원)

구분	국회의장	국회부의장	상임위원장	특별위원장	국회의원
월별 최소 수당액*	17,109,130	15,013,040	13,019,710	12,469,710	11,369,710
연간 최소 수당 합산액**	227,205,280	198,830,740	171,089,380	164,489,380	151,289,380

* 합산수당 : 일반수당, 관리업무수당, 정액급식비, 직급보조비, 입법활동비, 특별활동비(2018년 기준 회기일수 285일 X 31,360원 / 12개월), 세전
** 합산수당 : 일반수당, 관리업무수당, 정액급식비, 직급보조비, 입법활동비, 정근수당(2회), 명절휴가비(2회), 특별활동비(2018년 기준 회기일수 285일 x 31,360원), 세전

제외된 수당 :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등 대상자에 따라 달리 지급되는 수당
제외된 항목 : 특수활동비, 업무추진비, 특정업무경비

20대 국회의원의 연도별 수당 개인별 합산액 : 보러가기

문제점

- 국회는 자신의 수당을 법 개정 논의를 회피하고 규정 개정을 통해 수당액을 정하고 지급해 왔기 때문에 국회의원 수당을 정하는 근거와 과정을 국민들은 알 수 없음. 또한 해당

규정조차 정보공개 청구를 하지 않는 한 국민들에게 공개되지 않아 국회의원 수당을 정하는 과정 전반이 밀실에서 이뤄졌다고 할 수 있음.

- 누구나 찾아볼 수 있게 공개되어 있는 공무원보수규정과 달리, 근거도 과정도 공개되지 않는 국회의원 수당 지급 절차는 심각한 문제임. 또한 자신의 수당을 스스로 결정하는 방식도 바꿔야 할 필요가 있음. 한편 수감 중인 국회의원이 입법활동을 할 수 없는데도 관련 규정 미비로 대부분의 수당이 지급되는 것과 관련해 수당의 지급정지나 감액 등 개선 논의를 시작해야 함.
- 한편 국회의원에게 매월 지급되는 특별활동비와 입법활동비가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노동의 대가임에도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고 있음. 국회의원의 특별활동비와 입법활동비를 근로소득으로 간주하여 세금을 부과하고 관련 규정을 개선하는 논의를 해야할 것임.
- 나아가 통상적으로 임금은 노,사의 협상을 통해 결정하는 보편적 관행에 따라 국회의원 스스로 자신의 보수인 수당을 정하게 할 것이 아니라 독립적인 "국회의원보수산정위원회(가칭)"을 설치하여 결정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함.

개요

1. 취지와 목적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는 국회의 행정, 의정활동 등 국회개혁을 위해 국회 안팎에서 제기되는 문제점을 분석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이슈리포트를 발행하고 있음. 본 이슈리포트는 <국회개혁이슈리포트① 국회 정보공개 실태와 개선방안>에 이어 국회의원 수당의 지급 근거 등과 관련한 문제점을 살펴보고, 개선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작성되었음.

2. 분석 대상 자료

국회의원 수당은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이하 「국회의원수당법」)과 「국회의원수당법」이 위임한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에 따라 지급되어야 함. 그러나 올 3월,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의원이 실제 지급받는다고 공개[1]한 금액과 법률 등에 규정된 금액이 상이했음.

2018년 12월, 속칭 '국회의원 세비'를 인상했다는 언론 보도 후 비난이 이어지자 국회 사무처는 공무원 공통보수 증가율 1.8%를 적용하여 전년대비 1.2%가 증가했다고 반박함. 또한 국회의원 연간 수당 지급액이 2018년 1억 290만원, 2019년 1억 472만원이라 밝혔으나 근거 규정을 명확하게 제시하지 않았음[2].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는 국회의원 수당에 대한 정확한 법적 근거 및 수당 항목, 지급액 등을 확인하기 위해 2019년 4월 12일, 국회 사무처에 아래 항목을 정보공개 청구함.

- 정보공개청구 내역 : 2016년 5월 30일부터 2019년 3월 31일까지의

1. 국회의원에게 지급하는 각종 수당의 근거 법률과 규정, 기타 근거 조항
2. 국회의원 전원에게 공통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항목과 지급액
3. 국회의원 개인별 월별 지급 항목과 각각의 금액
4. 국회 본회의 및 상임위원회의 국회의원 개인별 출결 현황

이 중 1, 2번 항목은 공개되었으나 3번 항목인 국회의원 개인별/월별 지급 항목과 각각의 금액은 개인정보를 이유로 비공개처분함. 국회 사무처의 비공개 처분으로 인해 현재 수감중인 국회의원 뿐 아니라 '차관'보다 낮은 수당을 받고 있다고 알려진 실제 국회의원 수당액은 확인할 수 없음. 또한 국회의원수당법은 수당 지급의 예외사유를 국회의원이 직무로 상해, 사망할 경우로 한정하고 있고, 국회법은 사직, 퇴직의 경우만 명시하고 있음. 수감 중인 국회의원이 국회의원의 직무를 수행하지 못할 것이 분명한데도 예외 사유를 규정하지 않아 국회의원 수당을 지급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함.

또 회기 중 회의 출석 여부에 따라 지급되는 특별활동비를 산정하기 위해 청구한 4번 항목은 정보부존재 처분을 내림. 그러나 국회 사무처가 공개하고 있는 정보공개 목록에 따르면, 특별활동비 집행을 위한 본회의 및 상임위원회의 국회의원 출결현황 통지문서를 생산,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1] 한겨레신문, 의원 월급 지난해 실수령액 합쳐보니 1억2030만620원, 2019. 3. 9.
[2] 국회 사무처, [보도자료] 「국회의원 세비 인상」 보도에 대한 국회사무처의 입장, 2018. 12. 7.

확인됨. 2019년 4월 1일, 국회 사무처는 보도자료[3]를 통해 상반기 중 국회의원 출결현황과 수당 등을 포함한 사전 정보공개 대상을 확대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음. 또한 적극적인 정보공개로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시민의 참여와 정보의 사회적 가치를 증진시킬 수 있도록 하겠다 밝힘. '국민의 알권리'를 호명하면서도 분명히 존재하는 자료의 부존재를 이유로 공개하지 않은 것은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이자 부당한 처리임.

국회 사무처의 회의 출석현황 정보 비공개로 인해 특별활동비 지급 내역은 2018년도 회기 일수 285일을 모두 출석한 것으로 간주하고, 국회 사무처가 공개한 특별활동비 지급 기준 금액인 1일당 31,360원을 곱해 산출함.

「국회의원수당법」에 근거하지 않고 지급되는 특수활동비, 업무추진비, 특정업무경비 등은 국회사무처가 사무처리를 이유로 정보공개를 미뤄 이번 분석에서는 제외함.

- 분석에 포함된 수당
  - 일반수당, 관리업무수당, 정액급식비, 직급보조비, 입법활동비, 정근수당, 명절휴가비, 특별활동비
- 분석에서 제외한 수당과 국회의원에게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급여성 항목
  -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등 대상자에 따라 달리 지급되는 수당
  - 특수활동비, 업무추진비, 특정업무경비(정보공개가 이뤄지지 않아 별도 분석 예정)
  - 세전 기준

[3] 국회 사무처, [보도자료] 수당 등 국회의원 지원경비 모두 공개한다 - 투명하고 신뢰받는 국회를 위한 사전정보공개 대상 대폭 확대, 2019. 4. 1.

국회의원 수당 지급의 근거

1.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규칙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이하 「국회의원수당법)은 '국민에게 봉사하는 국회의원의 직무활동과 품위유지에 필요한 최소한의 실비를 보전하기 위한 수당'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지급기준과 수당의 항목 및 계산 방법 등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음. 「국회의원수당법」은 국회의원에게 입법활동비, 특별활동비, 입법 및 정책개발비, 여비를 지급하도록 하고, 그 기준 등은 「국회의원등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에 위임하고 있음.

「국회의원수당법」과 규칙에 따르면 국회의원 개개인에게 매월 정기적, 일괄적으로 지급되는 항목은 수당과 입법활동비, 특별활동비임. 입법 및 정책개발비는 국회의장이 각 교섭단체대표의원과 협의하여 정하도록 하여 정확한 지급 금액이 국회의원수당법과 규칙, 관련 규정에 드러나지 않고, 여비의 경우 공무로 여행할 경우가 발생할 때 지급하도록 함.

「국회의원수당법」과 규칙으로 매월 국회의원에게 공통적으로 지급하는 국회의원 수당, 입법활동비, 특별활동비는 아래 [표1]와 같음.

[표1] 「국회의원수당법」, 규칙에 따라 정기적, 일괄적으로 지급하는 수당 항목과 금액, 단위(원)

구분	수당	입법활동비	특별활동비
국회의장	1,496,000/월	1,200,000/월	입법활동비의 30/100 상당액 * 회기중에만 지급
국회부의장	1,275,000/월		
국회의원	1,014,000/월		

이 중 특별활동비는 「국회의원수당법」[4]에 따라 회기 중에만 지급하고 그 외 수당, 입법활동비는 회기와 관계없이 지급함. 특별활동비 집행 내역 분석을 위한 국회의원 출결현황은 2018년도 회기일수 285일을 기준으로, 전원 출석했다는 가정하에 산출함.

2.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규칙 제2조(수당의 지급기준 및 조정)는 '국회의장은 규칙이 개정될 때까지 수당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공무원보수의 조정비율의 범위내에서 정할 수 있다'고 명시함. 제3조(입법활동비의

[4] 국회의원수당법 제7조(특별활동비) ① 국회의원의 회기 중 입법활동을 특히 지원하기 위하여 특별활동비를 지급한다.
② 특별활동비는 별표 3에 의한 지급액의 3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에 회기일수를 곱하여 산출하고 회기 중에 지급한다.

지급기준 및 조정) 또한 '규칙이 개정될 때까지 입법활동비의 조정이 필요한 때 예산의 범위내에서' 국회의장이 정할 수 있도록 함.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가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받은 답변을 살펴보면, 국회 사무처는 규칙이 위임한 바에 따라 '국회의원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정'(이하 규정)을 기준으로 수당을 지급해옴.

규정에 따라 국회의원에게 지급되는 수당 항목은 아래 [표2]와 같음.

[표2] 국회의원수당 규정에 따라 지급하는 수당 항목

구분	규정	금액
일반수당	규정 제2조(수당)①	국회의장 - 9,952,600/월 국회부의장 - 8,488,300/월 국회의원 - 6,751,300/월
정근수당,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등 기타수당, 실비변상 등	규정 제2조(수당) ②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준용	정근수당 : 일반수당의 50%, 1월과 7월 지급 명절휴가비 : 일반수당의 60%
조정수당	규정 제2조(수당) ②공무원보수규정 제32조의2 준용 [공무원보수규정 제32조의2] ① 공무원 처우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봉급조정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봉급조정수당은 별표 30의3 제1호에 따라 지급한다. ③ 매년 1월 1일에 별표 30의3 제2호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봉급과 연봉에 산입한다. (별표30의3) 1.봉급조정수당지급 시기 및 지급액 : 기본연봉액의 53%의 12분의 1의 21%에 해당하는 금액 / 11월 지급 2. 봉급조정수당의 봉급 및 연봉 산입방식 : 전년도 기본연봉액 x 0.53 x 봉급조정수당의 전년도 8개월간 평균 지급률 등	공개하지 않음
직급보조비	규정 제2조(수당)②	국회의장 2,250,000 국회부의장 1,750,000 상임위원장 165,000 특별위원장 1,110,000
관리업무수당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당액의 100분의 9	일반수당의 9%
입법활동비	(별표2)	3,136,000/월
특별활동비	(별표3)입법활동비의 30분의 1에 해당하는 액에 회기일수를 곱하여 산출, 회기중에 지급	31,360/1일

국회사무처가 공개한 2016년 5월 30일부터 2019년 3월 31일까지 국회의원 전원에게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공통 항목 및 지급액은 아래 [표3]과 같음. [표3]의 수당 항목은 「국회의원수당법」과 규칙이 규정에 위임한 항목 및 공무원보수규정 등에 따라 국회의원에게 지급된 수당이며, 조정수당은 제외됨.

[표3] 2016년~2019년간 국회의원 전원에게 공통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항목과 지급액

구분	2016년~2017년	2018년	2019년	지급기준
일반수당	6,464,000/월	6,632,000/월	국회의장 - 9,952,600/월 국회부의장 - 8,488,300/월 국회의원 - 6,751,300/월	정액지급
관리업무수당	581,760/월	596,880/월	607,610	일반수당의 9%
정액급식비	130,000/월	130,000/월	130,000	모든 공무원 동일액
정근수당(월평균액)*	538,666	552,666	562,608	1월, 7월 일반수당의 50% (총 100%)
명절휴가비(월평균액)**	646,400	663,200	675,130	설, 추석 일반수당의 60% (총 120%)

* 정근수당 : 월평균액으로 공개되었으나 일반수당의 50%씩 1월과 7월, 두 차례 지급함(총 100%).
** 명절휴가비 : 월평균액으로 공개되었으나 일반수당의 60%씩 설과 추석, 두 차례 지급함(총 120%).

이 중 국회 사무처의 답변에 따라 2019년을 기준으로 국회의원 전원에게 공통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항목과 지급액은 아래 [표4]와 같음.(조정수당,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제외)

[표4] 국회의원 전원에게 공통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항목과 지급액(2019년 기준)/매월, 단위(원)

구분	국회의장	국회부의장	상임위원장	특별위원장	국회의원
일반수당	9,952,600	8,488,300	6,751,300	6,751,300	6,751,300
관리업무수당	895,730	763,940	607,610	607,610	607,610
정액급식비	130,000	130,000	130,000	130,000	130,000
직급보조비	2,250,000	1,750,000	1,650,000	1,100,000	-
입법활동비	3,136,000	3,136,000	3,136,000	3,136,000	3,136,000
***특별활동비 2018년 기준 285일x31,360원/12	744,800	744,800	744,800	744,800	744,800
매월 지급액 소계	**17,109,130**	**15,013,040**	**13,019,710**	**12,469,710**	**11,369,710**

* 정근수당 : 일반수당의 50%씩 1월과 7월, 두 차례 지급함(총 100%)
** 명절휴가비 : 일반수당의 60%씩 설과 추석, 두 차례 지급함(총 120%).
*** 특별활동비는 회기 중, 본회의 및 상임위원회 전체회의의 참석여부를 기준으로 1일 결석시 31,360원을 감액하여 지급함. 감액되는 결석의 기준은 청가서 혹은 결석계를 제출하지 않은 출장 및 무단결석임. 국회의원 출결현황이 공개되지 않아 2018년 회기일수 285일 기준, 1일 31,360원을 산출하여 계산하였음. 모두 세전.

*정근수당	4,976,300	4,244,150	3,375,650	3,375,650	3,375,650
**명절휴가비	5,971,560	5,092,980	4,050,780	4,050,780	4,050,780
***특별활동비 2018년 기준 285일x31,360원	8,937,600	8,937,600	8,937,600	8,937,600	8,937,600

2019년 기준, 국회의원 전원에게 지급하는 월/연간 지급 수당의 최소 합산액은 아래 [표5]와 같음.

[표5] 국회의원 전원에게 지급하는 월/연간 지급 수당 최소 합산 추정액(2019년 기준), 단위(원)

구분	국회의장	국회부의장	상임위원장	특별위원장	국회의원
월별 최소 수당액*	17,109,130	15,013,040	13,019,710	12,469,710	11,369,710
연간 최소 수당 합산액**	**227,205,280**	**198,830,740**	**171,089,380**	**164,489,380**	**151,289,380**

* 합산수당 : 일반수당, 관리업무수당, 정액급식비, 직급보조비, 입법활동비, 특별활동비(2018년 기준 회기일수 285일 X 31,360원 / 12개월), 세전
** 합산수당 : 일반수당, 관리업무수당, 정액급식비, 직급보조비, 입법활동비, 정근수당(2회), 명절휴가비(2회), 특별활동비(2018년 기준 회기일수 285일 x 31,360원), 세전

국회사무처가 공개한 자료를 바탕으로 계산한 151,289,380원은 국회의원 전원에게 정기적, 공통적으로 지급하는 수당을 합산한 것임. 한편, 2018년 12월, 국회 사무처는 보도자료[5]를 통해 2019년도 국회의원 수당은 연 1억 472만원이며, 「국회의원수당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지급되는 활동비는 연 4,704만원으로 전년과 동일하다고 밝혔음. 국회 사무처가 보도자료를 통해 밝힌 금액을 합산한 1억 5,176만원과 참여연대가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입수하여 산출한 1억 5,128만원과는 약 48만원 가량의 차이가 있음. 이 차이는 일부 공개되지 않아 참여연대 추산에서 빠진 수당 때문으로 추정됨.

3. 공무원보수규정과의 비교

공무원보수규정에는 대통령, 국무총리, 장관 등 '고정급적 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의 연봉표'(별표 32)가 명시되어 있음. 해당 연봉표가 포함된 공무원보수 및 수당에 관한 규정은 필요한 경우 국민 누구나 살펴보고 확인할 수 있음. 아래 [표6]은 공개된 규정 등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므로 대통령 등 정무직 공무원이 실제 지급받는 보수와 상이할 수 있음.

[표6] 고정급적 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의 연봉표, 단위(원), 일원단위 절사

구분	대통령	국무총리	부총리 및 감사원장	장관 및 장관급에 준하는 공무원	인사혁신처장, 법제처장, 식품의약품안전처장, 통상교섭본부장 및 과학기술혁신본부장	차관 및 차관급에 준하는 공무원

[5] 국회 사무처, [보도자료] 「국회의원 세비 인상」 보도에 대한 국회사무처의 입장, 2018. 12. 7.

연봉액*	226,297,000	175,436,000	132,727,000	129,008,000	127,146,000	125,289,000
정액급식비**	130,000/월	130,000/월	130,000/월	130,000/월	130,000/월	130,000/월
직급보조비***	3,200,000/월	1,720,000/월	1,340,000/월	1,240,000/월	1,150,000/월	950,000/월
연간 최소 보수 합산액	**266,257,000**	**197,636,000**	**150,367,000**	**145,448,000**	**142,506,000**	**138,249,000**

[근거 규정]

* 연봉액(공무원보수규정 별표32) : 공무원보수규정

제33조(연봉제의 구분 및 적용대상) 연봉제의 구분 및 그 적용대상 공무원은 별표 31에 따른다.

제35조(연봉 및 연봉한계액) 연봉제 적용대상공무원의 연봉 및 연봉한계액은 별표 32 및 별표 33에 규정된 금액으로 한다.

<부칙<대통령령 제29478호, 2019. 1. 8.>>제4조(고위공무원단 등의 봉급 및 연봉 지급에 관한 특례)⑬ 별표 3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9년 12월 31일까지는 같은 표를 적용받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종전의 별표 32를 적용한다.

** 정액급식비 :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정액급식비) 공무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월 13만원의 정액급식비를 보수지급일에 지급한다.

*** 직급보조비(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15) :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의6(직급보조비) 공무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 15의 지급 구분표에 따라 직급보조비를 보수지급일에 지급한다.

****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9조(수당등의 지급방법) ⑪ 「공무원보수규정」 제33조에 따른 고정급적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에게는 정근수당ㆍ관리업무수당 및 명절휴가비를, 성과급적연봉제 및 직무성과급적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에게는 정근수당ㆍ관리업무수당(「공무원보수규정」 제36조의2제1항에 따른 국립대학의 교원은 제외한다)ㆍ성과상여금 및 명절휴가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 봉급조정수당 제외

4. 법원, 헌법재판소 보수규정과의 비교

법원과 헌법재판소는 각각의 규칙으로 정한 보수를 공개하고 있음. 아래 [표7]은 공개된 규정 등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므로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에서 직무를 수행하는 법관들이 실제 지급받는 보수와 상이할 수 있음.

[표7] 법원 및 헌법재판소 보수 규정 등에 따른 보수 항목 및 금액, 단위(원), 일원단위 절사

구분	대법원장	대법관	헌법재판소장	헌법재판관
봉급액*	11,308,200	8,009,400	11,308,200	8,009,400
관리업무수당**	1,017,730	720,840	1,017,730	720,840
정액급식비**	130,000	130,000	130,000	130,000
직급보조비**	2,250,000	1,650,000	2,250,000	1,650,000
재판수당/심판수당**	400,000	400,000	400,000	400,000
월 최소 보수 합산액	15,105,930	10,910,240	15,105,930	10,910,240
정근수당** (1월, 7월)	5,654,100	4,004,700	5,654,100	4,004,700
명절휴가비** (설, 추석)	6,784,920	4,805,640	6,784,920	4,805,640
연간 최소 보수 합산액	**206,149,200**	**148,543,560**	**206,149,200**	**148,543,560**

[근거 규정]

* 봉급액 : 법관의 보수에 관한 규칙

제2조(보수의 기준) 법관은 "별표 1"기준의 봉급과 기타 보수를 받는다.

<부칙 <대법원규칙 제2833호, 2019. 3. 5.>> 제2조(보수 지급에 관한 특례)별표 1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9년 12월 31일까지는 3호봉 이상의 일반법관과 대법관 및 대법원장에 대하여는 종전의 별표 1을 적용한다.

* 봉급액 : 헌법재판소장 등의 보수에 관한 규칙

<부칙 <헌법재판소규칙 제405호, 2019. 3. 22.>>제2조(봉급지급에 대한 임시조치) 별표 1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9년 12월 31일까지는 다음 표를 적용한다.

** 관리업무수당, 정액급식비, 직급보조비, 정근수당, 명절휴가비, 재판수당 : 법관 및 법원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칙

제11조(관리업무수당) ① 법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월봉급액의 9퍼센트를 관리업무수당으로 지급한다.

제11조의2(정액급식비) 법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월 13만원의 정액급식비를 보수지급일에 지급한다.

제11조의7(직급보조비) 법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 6의2의 지급 구분표에 따라 직급보조비를 보수지급일에 지급한다.

제15조(특수업무수당) 법원공무원으로서 특수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 9의 지급 구분에 따라 특수업무수당을 지급한다.

제7조(정근수당) ① 법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근무연수에 따라 매년 1월과 7월에 별표 1의 지급구분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정근수당을 지급한다. ④ 제1항과 제3항의 근무연수는 매월 1일 현재를 기준으로 「국가공무원법」 제2조와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공무원(다만, 법령에 따른 봉급을 받지 아니하거나 비상근으로 근무한 공무원경력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인정하는 경력으로 한정한다)으로 근무한 기간을 합산하여(고등법원부장판사급 이상의 법관에 대하여는 10년 이상 근속한 공무원으로 본다) 계산한다.

제11조의4(명절휴가비) ① 설날 및 추석날(이하 "지급기준일"이라 한다) 현재 재직 중인 법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명절휴가비를 지급한다.

② 명절휴가비는 지급기준일 현재 월봉급액의 60퍼센트를 보수지급일 또는 지급기준일 전후 15일 이내에 각 기관장이 정하는 날에 각각 지급한다.

** 심판수당 : 헌법재판소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칙

제6조(특수업무수당) 헌법재판소공무원으로서 특수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 2의 지급구분에 따라 특수업무수당을 지급한다.

*** 봉급조정수당 및 근속연수에 따라 달라지는 정근수당 가산금 제외

국회의원 수당의 문제점

1. 법 위의 규정, 위임에 위임을 통한 수당 인상

「국회의원수당법」 중 국회의원 수당(일반수당), 입법활동비, 특별활동비는 1988년 12월 29일 개정된 이후 2018년 6월 12일에 다시 개정됨. 개정된 내용은 한자로 기재된 별표의 조문을 한글로 변경하는 것이었을 뿐 각각의 금액은 개정되지 않았음.

반면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입수한 국회의원수당규정 중 국회의원 수당(일반수당)은 2012년 2월 6일, 2018년 2월 7일, 2019년 2월 8일에 각각 개정됨. 직급보조비는 2017년 2월 12일, 입법활동비는 2010년 8월 20일에 개정되었고 특별활동비는 개정되지 않음. 또한 규정은 정보공개를 청구하지 않는 한 국민들에게 공개되지 않음. 즉 국민들에게 공개되는 「국회의원수당법」과 규칙은 개정하지 않은 대신 공개되지 않아 온 규정을 개정하여 꼼수로 수당을 인상해 온 것이 확인됨. 이와 달리 공무원보수규정 및 공무원 수당에 관한 규정이나 법관과 헌법재판소장, 소속 공무원들의 보수와 수당을 명시한 규칙들은 별도의 정보공개 청구 없이 국민 누구나 찾아볼 수 있음.

공개되는 법률이나 시행규칙이 아니라 규정을 통해 입맛대로 수당을 인상해 온 것임. 국회에 대한 불신이 큰 상황에서 수당을 포함한 국회의원 '세비'를 인상할 경우 비판 여론을 피하려는 꼼수로 추정할 수 있음. 실제로 2018년 12월, 국회의원 '세비' 인상에 대한 언론 보도 후 국회의원 세비 인상 반대 청와대 국민 청원이 개시되는 등 비판 여론과 비난이 확산되자 거대 정당을 제외한 정당들이 '인상분' 반납을 약속한 것과 무관하다 보기 어려움.

공무원, 법관의 보수와 관련한 규정 등이 누구나, 언제라도 찾아볼 수 있도록 공개되지만, 국회의원의 수당에 대한 정보는 법률이나 시행령에 해당하는 국회규칙이 아니라 규정을 개정하는 방식으로 지급되고 관련 규정을 비공개하는 것은 비판받아야 함. 국회의원 수당을 올리거나 조정할 필요가 있다면 법률 개정을 통해 투명하게 진행되어야 함.

2. '입법활동 지원' 명목의 수당 중복 지급

「국회의원수당법」에 따르면 국회의원의 기초자료 수집, 연구 등 입법활동을 위하여 입법활동비를 매월 지급하고 국회의원의 입법 및 정책개발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입법 및 정책개발비를, 국회의원의 회기 중 입법활동을 특히 지원하기 위해 특별활동비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음.

이에 따라 국회는 국회의원 1인에게 매월 3,136,000원의 입법활동비를 일괄 지급하고, 입법 및 정책개발비는 국회의장과 각 교섭단체대표의원 간의 협의로 결정, 특별활동비는 '회기 중' 1일당 31,360원을 회기일수에 곱하여 지급하고 결석 등의 경우 감액함.

「국회의원수당법」에 규정한 바와 같이 기초자료 수집, 연구를 바탕으로 입법 및 정책을 개발하고 회의에 참석하는 것은 국회의원 본연의 역할이자 직무임. 국회의원 본연의 직무 수행에 대한 대가를 각종 수당으로 중복 지급하는 것은 부적합함.

3. 특별활동비의 이상한(?) 지급 관행

국회 사무처는 특별활동비 지급 전제 조건인 회기 중 '회의 참석'의 경우, 출석 여부를 확인하는 회의는 본회의 및 상임위원회 전체회의만 해당하고 소위원회는 해당하지 않으며, 소위원회를 제외하고 산정하는 근거 법령은 없으나 관행에 따른 것이라고 밝힘.

지급 조건 중 하나인 '회기 중'에 본회의 및 상임위원회가 개최되지 않을 경우, 국회의원 전원이 참석한 것으로 갈음하여 회기일수에 31,360원을 곱해 지급한다고 밝힘.

따라서 제361회(임시회) 기간인 2018년 6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30일간, 제366회(임시회) 기간인 2019년 1월 19일부터 2019년 2월 17일까지 중 2월에 해당하는 17일간에는 본회의 및 상임위원회 전체회의가 단 한번도 개최되지 않았으나 특별활동비가 지급됨.

2018년 6월경의 상황을 돌이켜보면, 2018년 5월 29일 자유한국당 권성동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보고되었음. 같은 날, 자유한국당은 단독으로 6월 임시국회를 소집함. 이로 인해 권성동 의원의 체포동의안 본회의 처리를 저지하기 위한 '방탄국회'라는 비판을 받았고 2018년 6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이후에도 본회의 및 상임위원회는 개최되지 않았음.

2019년 1월 24일, 자유한국당은 조해주 선거관리위원원회 상임위원 임명과 관련하여 국회 의사 일정 전면 보이콧을 선언함. 이로 인해 2월 임시국회는 개최되지 않고 3월 7일에서야 임시국회가 소집됨.

4. 입법활동비와 특별활동비에 대한 근거 없는 비과세

소득세법 제20조는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 급료, 보수, 세비, 임금, 상여, 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를 근로소득으로 규정함. 관계 법령에 따라 국회의원이 지급받는 일반수당, 관리업무수당, 정액급식비, 정근수당, 명절휴가비는 과세 대상임.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는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검사의 보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등에 따라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직급보조비를 근로소득으로 규정하나 국회 규칙은 제외하고 있음. 국회 규칙이 제외된 이유는 국회의원수당규칙에 직급보조비 조항이 존재하지 않고 규정에만 명시되어 있기 때문임.

또한 입법활동비와 특별활동비는 소득세법 시행령 12조 9항에 속하는 실비 변상적 급여로 과세 대상이 아니며, 건강보험료 산정 기준에서도 제외되고 있음. 매월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입법활동비와 결석시 감액되나 통상적으로 국회의원 전원에게 지급하는 특별활동비를 실비 변상적 급여로 보기 어려움. 과세 대상으로 전환해야 함.

결론과 대안

독립적인 국회의원보수산정위원회 설치

국회의원에게 매월 지급되는 수당, 속칭 '세비'는 일본식 용어로 「국회의원수당법」이 1973년 개정된 이래 공식용어로 사용되지 않음. 국회의원의 수당은 매월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봉급의 개념이므로 '수당'이라는 용어 또한 적절치 않음. 봉급과 그 밖의 각종 수당을 합산한 금액을 보수라고 정의하는 공무원보수규정을 준용하여 명칭을 일원화할 필요 있음. 여러 법률과 규정에 흩어진 보수와 수당 산정 방법, 그리고 보수를 산정하는 위원회 규정을 담아 가칭「 국회의원보수산정에관한법률」 을 제정할 필요가 있음.

「국회의원수당법」과 규칙, 규정에서 드러난 바와 같이 국회의원의 수당을 결정하는 과정과 결과는 투명하지 않음. 「국회의원수당법」 개정 대신 국회의장이 결정할 수 있도록 위임한 국회의원수당규정을 개정하는 방식으로 수당을 증액시키고 정보공개청구를 통해서만 공개하는 과정이 이 사실을 뒷받침함. 국회의원이 자의에 따라 스스로의 보수를 결정하는 방식 또한 납득하기 어려움. 통상 임금이나 보수가 노사간의 협상을 통해 결정되는 보편적 관행에 비추어 국회의원들이 본인들에 뜻대로 보수인 수당을 산정하는 현재의 방식은 합리적이지 않음.

국회의원 수당과 관련해 드러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회에 종속되지 않은 독립적인 <국회의원 보수산정위원회>를 설치하고 구성해야 함. 영국 의회는 IPSA(Independent Parliamentary Standards Authority) 라 불리는 독립적인 보수산정위원회를 출범시켜 다양한 시민들로 구성하고 의원의 봉급 및 수당 체계의 적정 수준을 제안, 지급하며 지출을 감시하고 있음.

국회에 종속되지 않은 독립적인 보수산정위원회를 설치할 경우 국회의원이 자의적으로 자신의 보수를 산정하는 대신 적정 체계를 제안, 논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법적근거 뿐 아니라 관행적으로 국회 예산을 집행해 온 국회 사무처 대신 집행과 그에 대한 책임까지 함께 부여해 견제할 수 있도록 해야 함.

현재 국회에는 독립적인 국회의원보수산정위원회 설치, 입법활동비 및 특별활동비 폐지 및 보수 전환 등의 내용을 주로 하여 정의당 심상정 의원 등 11인이 [2019149]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으나 계류되어 있음.

부록

[별첨] 20대 국회의원의 연도별 수당 개인별 합산액 : 보러가기

정보공개 청구에 대한 국회 사무처 답변

<국회의원 수당 등 지급기준(2016년~2019년)>

(단위: 원)

항 목	월지급액			지급기준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일반수당	6,464,000	6,632,000	6,751,300	정액지급
관리업무수당	581,760	596,880	607,610	일반수당의 9%
정액급식비	130,000	130,000	130,000	모든 공무원 동일액
정근수당 (월평균액)	538,666	552,666	562,608	1월, 7월 일반수당의 50% (총 100%)
명절휴가비 (월평균액)	646,400	663,200	675,130	설, 추석 일반수당의 60% (총 120%)
계	8,360,826	8,574,746	8,726,648	

※ 입법활동비 : 월 3,136,000원

특별활동비 : 회기 중 1일당 31,360원씩 지급, 폐회중 미지급, 결석시 감액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1993.12.27 국회규정제361호 제정
개정 1995.01.07 국회규정제406호
1995.12.30 국회규정제436호
1996.12.31 국회규정제445호
1997.11.26 국회규정제453호
1997.12.31 국회규정제468호
1999.01.18 국회규정제474호
2000.01.14 국회규정제489호
2000.08.09 국회규정제500호
2001.01.12 국회규정제503호

2002.01.17 국회규정제517호
2002.11.19 국회규정제528호
2003.01.13 국회규정제534호
2003.11.13 국회규정제552호
2004.01.12 국회규정제558호
2004.11.25 국회규정제571호
2005.01.10 국회규정제573호
2006.01.18 국회규정제588호
2007.1.18 국회규정 제604호
개정 2008.1.17 국회규정 제621호
개정 2010.08.20 국회규정 제671호
개정 2011.01.05 국회규정 제677호
개정 2012.02.06 국회규정 제715호
개정 2017.7.12 국회규정 제811호
개정 2018.2.7 국회규정 제824호
개정 2019.2.8 국회규정 제843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 "이라 한다) 제2조·제6조 및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규칙」 (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조·제3조의 단서규정에 의한 수당과 입법활동비의 조정지급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 다.<개정 2007.1.18>

제2조(수당) ①법 제2조 및 규칙 제2조의 각 단서규정에 의하여 수당은 별표 1의 기준에 의하여 지급한다. ② 정근수당, 가족수당 및 자녀학비보조수당 등 기타수당 및 실 비변상 등의 지급은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 고, 조정수당의 지급은 「공무원보수규정」 제32조의2를 준용한 다. 다만, 직급보조비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별표 1의3의 기준에 의하여 지급한다.<개정 2002.11.19, 2007.1.18, 2010.8.20> ③관리업무수당은 예산의 범위안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당 액의 100분의 9를 지급한다.<개정 2006.01.18>

제3조(입법활동비) 법 제6조 및 규칙 제3조의 각 단서규정에 의하 여 입법활동비는 별표 2의 기준에 의하여 지급한다.

제4조(특별활동비)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활동비는 별표 3 에 의한 지급액의 30분의 1에 해당하는 액에 회기일수를 곱하여 산출하고 회기중에 지급한다.

부칙 <제361호, 1993.12.27>

이 규정은 199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06호, 1995.01.07>

이 규정은 1995년 1월 7일부터 시행하되, 1995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436호, 1995.12.30>

이 규정은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45호, 1997.11.26>

이 규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53호, 1997.12.31>

이 규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68호, 1999.01.18>

①(시행일) 이 규정은 1999년 1월 20일부터 시행하되, 1999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기말수당의 지급에 관한 임시조치) 제2조제2항의 규정에 불구 하고 1999년 12월 31일까지 기말수당액의 7할을 기말수당으로 지급한다.

부칙 <제474호, 2000.01.14>
이 규정은 2000년 1월 14일부터 시행하되, 2000년 1월 1일부터 적 용한다.

부칙 <제489호, 2000.08.09>
이 규정은 2000년 8월 9일부터 시행하되, 2000년 8월 1일부터 적 용한다.

부칙 <제500호, 2001.01.12>
①(시행일) 이 규정은 2001년 1월 12일부터 시행하되, 2001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수당지급에 관한 임시조치) 별표 1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2001년 12월 31일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수당을 지급한다. 다만, 공무원보수규정 제32조의2제3항에 의하여 수당에 산입되는 조정수당은 이를 지급한다.

부칙 <제503호, 2002.01.17>
이 규정은 2002년 1월 17일부터 시행하되, 2002년 1월 1일부터 적 용한다.

부칙 <제517호, 2002.11.19>
이 규정은 결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2년 11월 1일부터 적용한 다.

부칙 <제528호, 2003.01.13>
이 규정은 2003년 1월 13일부터 시행하되, 2003년 1월 1일부터 적 용한다.

부칙 <제534호, 2003.11.13>
이 규정은 결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3년 11월 1일부터 적용한 다.

부칙 <제552호, 2004.01.12>
이 규정은 2004년 1월 12일부터 시행하되, 2004년 1월 1일부터 적 용한다.

부칙 <제558호, 2004.11.25>
이 규정은 결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4년 11월 1일부터 적용한 다.

부칙 <제571호, 2005.01.10>
이 규정은 결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5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573호, 2006.01.18>
이 규정은 결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6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604호,2007.1.18>
이 규정은 결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7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621호,2008.1.17>
이 규정은 결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8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671호,2010.8.20>
①(시행일) 이 규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입법활동비 지급에 관한 특례) 국회의원에게 지급하는 입법활 동비는 별표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1년 1월분부터 11월분 까지는 매월 1,891,800원을 지급한다.<신설 2011.1.5>

부칙 <제677호,2011.1.5>
이 규정은 국회공보에 게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1년 1월 1일부 터 적용한다.

부칙 <제715호,2012.2.6>

이 규정은 국회공보에 게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2년 1월 1일부 터 적용한다.

부칙 <제811호,2017.7.12>

이 규정은 결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7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824호,2018.2.7>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결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수당지급에 관한 적용례) 이 규정은 2018년 1월 1일 이후 지급하는 수당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843호,2019.2.8>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결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수당지급에 관한 적용례) 이 규정은 2019년 1월 1일 이후 지급하는 수당부터 적용한다.

[별표 1]<개정 2012. 2. 6, 2018. 2. 7, 2019. 2. 8>

수당(제2조제1항관련)

내 역	구 분	지 급 액
수 당	국회의장	9,952,600원
	국회부의장	8,488,300원
	국회의원	6,751,300원

[별표 1의2] 삭제<2006.1.18>

[별표 1의3]<개정 2017.7.12>

직급보조비(제2조제2항관련)

구 분	지 급 액
국회의장	2,250,000원
국회부의장	1,750,000원
위원장	1,650,000원

비고 : 「국회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에 대한 직급보조비는 위원장 월지급액의 3분의 1을 감액한 110만원을 지급한다.

[별표 2]<개정 2010.8.20>

입법활동비

내 역	지 급 액
입법활동비	3,136,000원

[별표 3]

특별활동비

내 역	지 급 액
특별활동비	입법활동비의 30/100상당액

참여연대 이슈리포트
국회개혁이슈리포트② 국회의원 수당의 비밀

발행일 2019. 5. 22.
발행처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 (소장 : 서복경 교수)
담당 오유진 간사 02-725-7104 aw@pspd.org

※ 본 자료는 참여연대 웹사이트에서 다시 볼 수 있습니다.

세상을 바꾸는 시민의 힘
참여연대

참여연대는 정부보조금 0%, 회원의 회비로 운영됩니다.
대표전화 02-723-5300 회원가입 02-723-4251
주소 03036 서울 종로구 자하문로9길16 (통인동)
홈페이지 www.peoplepower21.org
참여연대 커뮤니케이션 채널 안내(SNS·뉴스레터·보도자료 수신 등)